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나. 발 의 자: 신홍식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신홍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 일대를 포함한 영등포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관리·운영의 위탁, 관계기관과의 협력,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안건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적용하여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이 금융산업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부터 제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에서는 금융사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사업,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0조(행정지원 등)에서는 금융기관이 여의도에서 신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여의도로 이전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검토 결과

- 정부는 지난 2007년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법」(시행. 2008.3.22.)을 제정함.
-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서는 '09.1월 서울특별시 여의도와 부산광역시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면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한 바 있음.
- 정부 및 서울특별시 주도하에 추진되던 여의도 금융중심지 사업이 2019년 우리 구(區)에서도 국제금융타운을 신설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체 조례 제정 없이 금융교육 및 홍보영상 송출 등의 사업에만 치중된 실정임. 더욱이 2023년 7월 국제금융타운(미래비전추진단/비전협력과 → 기획재정국/지역경제과)이 속해있던 미래비전추진단이 다른 과로 통폐합되면서 금융특구에 관한 사항이 다소 축소된 경향이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

가('24.3.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33개 도시 중 서울시가 10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9월 평가 결과(11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임.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23년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확정하며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4대 추진 과제를 수립함.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 구(區)에서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의도의 금융 인프라 구축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5
----------	-----

발의연월일: 2024. 9. .

발 의 자: 신흥식, 김지연, 양송이
우경란 의원(4인)

1. 제안이유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 일대를 포함한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관리·운영의 위탁, 관계기관과의 협력,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금융중심지”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 지정한 금융중심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금융산업 발전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관한 국제 동향의 파악
2. 서울 금융중심지 내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홍보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4.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
5. 그 밖에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구청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신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